

2019년 8월 7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종자생명산업과 과 장 김민욱(044-201-2471), 사무관 박영완(2479)/ 제공일: 8월 6일(총 1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농식품부, 「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」 발표

- 무병화묘 생산·유통 활성화, 묘목 유통질서 건전화, 품종수입 투명화 추진 -

《 주 요 내 용 》

- ◆ (배경) 최근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외국품종 도입 논란, 유통 묘목의 품질 문제로 농가피해를 우려하는 인식 확산
 - 두 차례('05, '16)의 과수 무병화묘 공급확대 대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, 공급실적이 미미(유통량 비율 1.1%)하여 보완 필요성 대두
- ◆ (대책) 과수묘목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무병화묘 생산·유통 활성화, 묘목 유통질서 건전화, 품종수입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
 - (무병화묘 생산·유통 활성화) 무병화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, 생산 및 유통 확대를 위해 국립종자원이 무병화 관리를 총괄토록 하고, 무병화묘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무병화묘 보급체계를 개선
 - (유통질서 건전화) 품종·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된 보증묘목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사업시 우대 지원하고, 종자업등록 및 판매신고 등 주요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
 - (품종 수입 투명화) 외국품종을 도입하기 전, 종자업자의 판매 신고 과정에서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이개호)는 과수묘목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구매하는 건전한 묘목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「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」을 마련·발표하였다.
- 최근 과수작물 중심으로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외국품종의 도입 문제가 대두되면서 농가 피해를 우려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,
- 무병 건전하면서도 품종이 정확한 묘목에 대한 농가의 요구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,
- 묘목산업 전반에 내재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.
- 금번 대책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정부, 업계,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(TF)을 구성·운영하였으며, 정책 현장 방문, 관련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쳤다.
- 이번 대책은 무병화묘* 생산·유통 활성화, 묘목의 품질제고 및 유통질서 건전화, 외국품종의 도입·유통체계 투명화를 목표*로 하고 있으며,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* 무병화묘(無病化苗) : 현재 종자관리요강에 고시된 바이러스 진단법에 의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무병 건전한 어미묘(모수)로 부터 증식된 보급묘

< ※ 목표 세부지표 >

△ 무병화묘 보급률 : ('18) 1.1%(44천주) → ('24) 5(165) → ('30) 60(1,980)

△ 품질관리: ('19~'21) 교육·홍보(665업체) → ('23) 현장진단 기술개발(품종, 바이러스)

□ 첫째로, 과수 무병화묘 생산·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종자원이 과수 무병화* 관리를 총괄하고, 무병화묘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무병화묘 보급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

* 바이러스 무병화 과정(열처리, 생장점 배양 등)을 거쳐 무병 묘목을 선별하는 것

○ 바이러스 검정 및 무병 원종·모수* 관리능력이 확보된 중앙과수묘목센터 및 지자체 기술센터 등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,

* (원종, 原種) 개발된 품종을 1세대 증식한 것, (모수, 母樹) 원종에서 유래된 무성 번식체로 보급(종자가 보급 묘목 생산용 재료가대목, 접수 등)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물체

○ 농기선포도가 높은 품종의 무병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과수묘목센터의 무병화 인력 확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(R&D) 사업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둘째로, 묘목의 품질을 제고하고 유통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해 품종·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된 보증묘목*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하고,

* 보증항목(종자관리사) : 품종, 규격(길이, 직경), 뿌리충실도, 기타병(뿌리혹병, 궤양병 등)

○ 정예 명예감시원을 양성하고, 국립종자원의 유통조사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불법 유통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, 종자업 미등록 등 주요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셋째로, 외국품종의 도입·유통체계를 투명화하기 위해 외국 품종을 도입하기 전, 종자업자의 판매신고 과정에서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*를 마련하는 동시에,

* 외국보호품종의 생산·수입 판매신고 시 국내 증식·유통의 권리증명서 제출 의무화

○ 수입단계(통관과정)에서도 품종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고, 고위험 병원체 기주식물(과수 묘목류)에 대한 수입검역(실험실 정밀검역)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“이번 「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」이 과수묘목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농가는 안심하고 종자를 구매하고, 종자업계는 더욱 신뢰받아 종자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.”면서 “앞으로도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정비와 함께 소요예산 확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① 과수 무병화묘 생산·유통 활성화

① 과수(품종) 무병화 기반 강화

- 무병화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, 생산 및 유통 확대를 위해 우량종자의 생산·보급 업무를 주관하는 국립종자원이 무병화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,
- 실용화재단, 지자체, 대학 등 역량이 있는 기관에서도 자율적으로 무병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병화 매뉴얼을 보급하고, 기관간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.
- 또한, 외국품종 무병화를 전담하는 중앙과수묘목센터의 연구개발(R&D)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병화 인력 확충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,
- 농가 선호도가 높은 사과·배·포도 27품종*을 가능한 조기에 무병화하기 위해 연구개발(R&D)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* (사과) 로열킹후지 등 15품종, (배) 신화 등 6품종, (포도) 샤인머스켓 등 6품종

② 과수 무병화묘 보급체계 개편

- 중앙과수묘목센터 외에도 일정 시설·인력 등의 자격을 갖춘 지자체, 묘목업체 등도 무병 원종·모수*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,
- 농가가 과원 품종갱신을 위해 FTA 정책사업을 지원받는 경우 무병화묘 이용을 '24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.

* ('24년부터, 보급률 5% 목표) 우선지원, ('30년부터, 보급률 60% 목표) 의무화

③ 과수 무병화묘 인증체계 구축

- 바이러스 검정기관 지정 및 검정방법 표준화 등을 추진하여 무병화묘 인증제도 도입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,
- 보급종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화한 무병화묘 보증체계를 무병 원원종·원종·모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증체제로 개편*할 계획이다.

* (기존) 보급종 기반 ‘보증’ → (개편안) 원원종·원종·모수 기반 ‘인증’

- 중앙과수묘목센터와 같이 바이러스 검정 및 무병 원종·모수 관리능력이 확보된 지자체 기술센터 등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, 무병화묘 유통시 인증라벨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.

④ 무병화묘 인식·보급 확산

-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영향 평가 등을 통해 무병화묘의 경제적 효용성을 규명하고, 비교포장 조성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며,
- 과종·품종별 바이러스 연구 및 바이러스 특성에 따른 무병화 기술을 개발하여 무병화묘 보급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.
- 또한, 무병화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신상품 출원 시에도 무병화 시료의 제출을 ‘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갈 예정이다.

* (농진청 직무육성품종·외국품종) ‘26년부터 우선 적용, (기타) ’30년 이후

2. 묘목의 품질제고 및 유통질서 건전화

① 보증묘목 유통 활성화

- 보증항목에서 바이러스는 인증체제로 개편하되 바이러스 검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증기준을 개선하는 한편,

- '21년부터 FTA 품종갱신사업 추진시 종자관리사가 품종·품질을 철저하게 검사한 **보증묘목***에 한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.

* 보증항목 : 품종, 규격(길이, 직경), 뿌리충실도, 기타병(뿌리혹병, 궤양병 등)

② 불법·불량 묘목 유통관리 강화

- 정예 명예감시원을 양성하고, 지자체·명예감시원 등과 협력하여 불법·불량 묘목 유통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,
- 불법·불량 종자 유통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립종자원의 유통조사 전담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.

③ 묘목 품질관리 역량제고 및 기반강화

- 유통묘목의 품질제고와 정확한 품질표시를 위해 보증주체인 종자관리사와 보증·품질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,
- 규격미달, 품종혼입 등 불량묘목의 유통 가능성이 높은 종자업 무등록자의 묘목판매 행위, 품종의 생산·수입 판매신고 등 주요 준수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*해 나갈 계획이다.

<※ 종자업 미등록/ 판매신고 허위·미신고 행위 처벌기준 개선안>

△ (현행)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→ (개선안)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

④ 과학적 유통관리 강화

- 종자분쟁 조정 및 불법종자의 효율적인 유통관리를 위해 신속·저비용·대용량의 유전자 분석기법 개발*을 추진하며,

* 현장진단분석기법, One-Stop분석기법(품종식별과 바이러스검사 동시 진행)

- 현재 사과, 배 등 7개 과종에 대해 구축된 품종식별 유전자 데이터 베이스를 포도 등을 포함한 9개 과종으로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.

③ 외국품종의 도입 · 유통체계 투명화

① 외국 품종의 판매신고 제도 개선

- 외국품종을 도입하기 전, 종자업자의 생산·수입 판매신고* 단계에서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.

< ※ 품종의 생산·수입 판매신고 제도(종자산업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27조) >
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품종의 종자(예외: 출원공개된 품종, 국가품종목록등재된 품종)에 대해 미리 신고하고 유통하는 제도

- 종자업자는 국내에 출원되지 않은 외국의 보호품종을 판매하려고 신고하는 경우, 국내 증식·유통의 권리*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,
* 외국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에 도입시 품종보호권자 종자업자 농가 간에 권리분쟁 우려
- 보호품종이 아닌 외국품종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거래명세서 등 해당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② 수입검역 관리 강화

-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병원체의 기주식물중 과수 묘목류는 수입 검역시 병원체(세균, 바이러스 등) 감염증상이 없더라도 항혈청검사의무화 등 실험실 정밀검역을 강화하고,
- 격리재배 검역 포장에 대한 '격리재배지 지정제도'를 도입하여 묘목의 무단유출 등 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기능정지,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법제화해 나갈 계획이다.

③ 수입종자(품종) 신고 의무화 추진

- 외국 과수 품종의 국내 수입 이후 생산·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과정에서 수입하는 품종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.

<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>

◇ 최근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외국품종 도입 논란, 유통 묘목의 품질 문제로 농가피해를 우려하는 인식 확산

○ 두 차례('05, '16)의 과수 무병화묘 공급확대 대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, 보급실적이 미미(묘목유통량의 1.1%)하여 보완 필요성 대두

<대책수립 추진경과> :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TF 구성(3월, 농업생명정책관)
 → TF 반별 추진과제 검토(외부전문가 참여 및 현장방문) 및 대책안 마련(4~6월)
 → 산·학·관·연 전문가 회의(의견수렴 2회, 4·6월) → 대책 보완·확정(7월)

I. 현황 및 문제점

□ (현황) 과수묘목 시장규모('17)는 618억원으로 1,339만주가 생산

- * 주요 5대 과종 현황 : 판매액 331억원(점유율 54%), 생산량 557만주(42%)
- * 무병화묘 생산현황(중앙과수묘목센터) : ('16) 46천주 → ('17) 59 → ('18) 44

○ 종자업 등록수('18 누계)는 665개소(점유율 30%)로 경산, 옥천에 집중 분포

○ 유통경로는 주로 △직거래(산규과원 조성), △판매상(도·소매), △조합(계약·출하) 등

<품종보호출원 및 판매신고 현황('18. 누계)>

구 분	계	국내품종	과수류	국외품종	과수류
품종보호출원	10,274품종	8,074(79%)	528(7%)	2,200(21%)	132(6%)
판매신고	33,585품종	19,247(57%)	130(0.7%)	14,338(43%)	772(5%)

□ (문제점) 최근 과수 중심으로 권리분쟁 소지 및 무등록 업체의 묘목품질 문제 등으로 농가 피해 확산 우려

○ 그간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무병화묘 공급확대 대책('05, '16)에도 불구하고, 보급실적이 미미*하여 보완 필요성 대두

* 무병화묘 생산량(중앙과수묘목센터, '18) : 44천주(6대 과종 묘목유통량의 약 1% 수준)

II.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(목표별 추진방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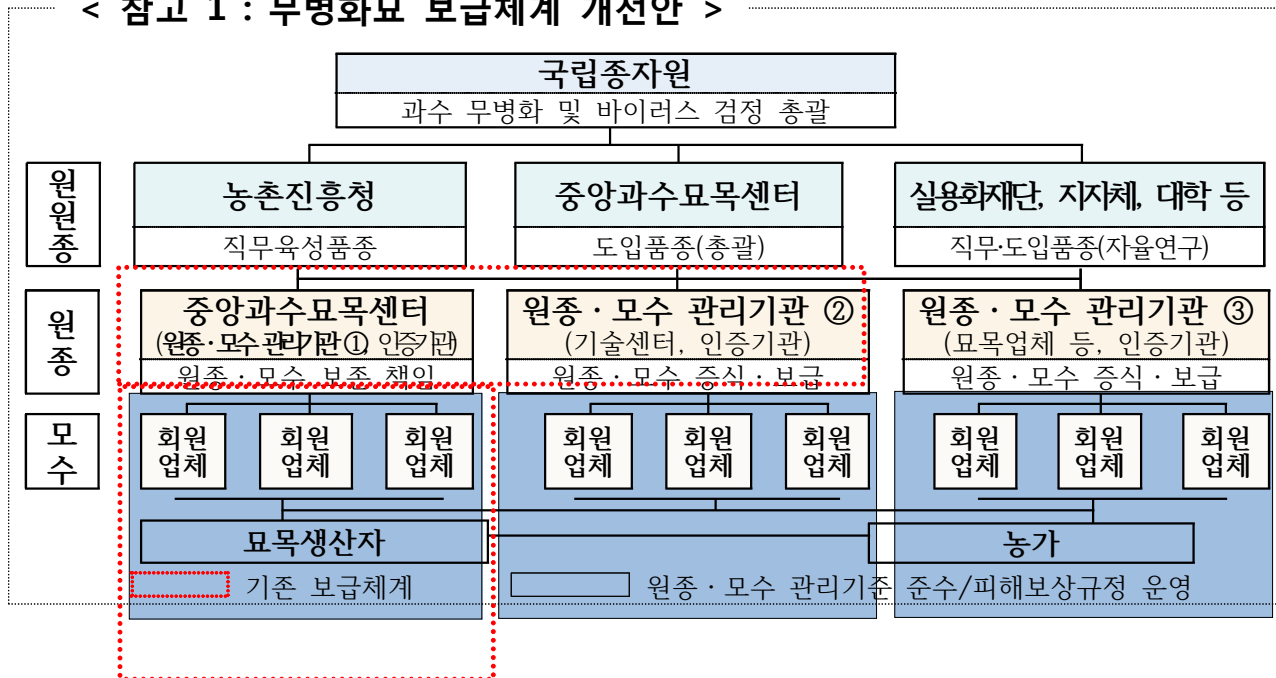
< 비전 및 목표 >

- ◇ (비전) 농가가 믿고 소비하는 건전한 묘목 유통 생태계 조성
- ◇ (목표) 무병화묘 생산 활성화, 묘목 유통질서 건전화, 품종 수입 투명화
 - * 무병묘 보급률 : ('18) 1.1%(44천주) → ('24) 5(165) → ('30) 60(1,980)
 - * 품질관리 : ('19~'21) 교육·홍보(665업체) → ('23) 현장진단 기술개발(품종, 바이러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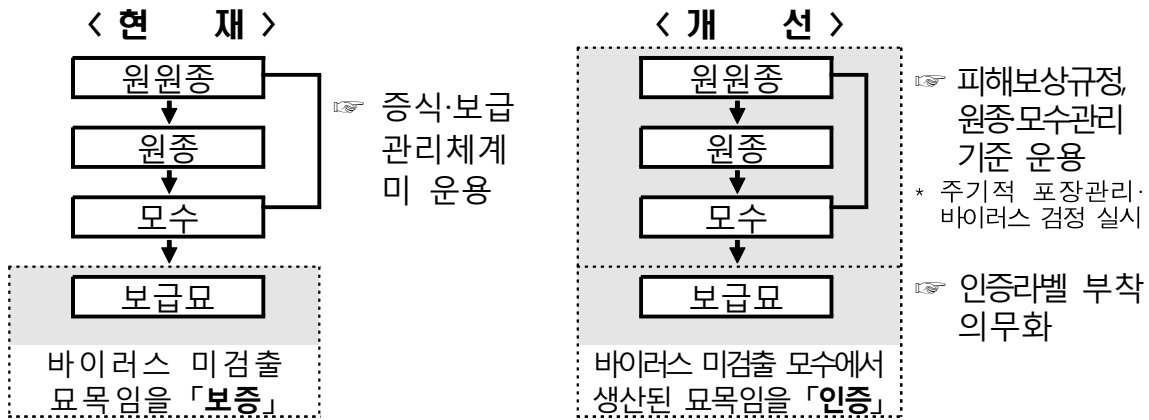
□ (무병화묘 생산 활성화) 국립종자원이 과수 무병화를 총괄하고, 무병화묘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무병화묘 보급체계 개선

구 분	한 계(As-Is)	추진 방향(To-Be)
품종 무병화	△ 중앙과수묘목센터의 연구인력 부족, 직무육성품종의 농가 선호품종과 괴리 등으로 무병화묘 생산·보급 지연	△ 무병화묘의 안정적 개발, 체계적 관리를 위한 무병화 총괄기관 지정(종자원) 및 중앙묘목센터의 무병화 R&D 역량 강화
생산기반	△ 기존 기반시설(상주·거점묘포장) 중심으로 6대 과종의 무병 대목접수 공급	△ 무병 대목접수 생산기반 추가 조성 지원 및 무병 원종·모수 일시 보급 확산 체계 마련
보증체계	△ 바이러스 검정결과에 대한 불신, 보증에 따른 책임 및 벌칙, 검정비용 부담 등으로 보증묘(무병화묘) 취급기피	△ 공신력 있는 바이러스 검정기관 지정 및 원종·모수 관리 기반의 무병화묘 인증체계 구축
R&D	△ 무병화묘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및 사례조사 등이 부족하여 농가 선호도 저조	△ 무병화묘 생산·검정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 성과 홍보를 통한 농가인식 개선

< 참고 1 : 무병화묘 보급체계 개선안 >



< 참고 2 : 무병화묘 인증제도 개선안 >



□ (유통질서 건전화)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품질보증 활성화 및 업등록·판매신고 위반자 처벌 강화 및 유통단속 인력 확충

구 분	한 계(As-Is)	추 진 방 향(To-Be)
업체역량	△ 업체 영세성으로 품질보증이 미흡, 불량묘목 공급 등 피해로 민원 다수 발생	△ 보증제도 개선 및 정책 연계를 통한 품종·품질이 보증된 묘목 유통 활성화
품질표시	△ 대부분 품목, 품종명만 표시하는 등 11개의 품질표시 항목 미준수	△ 현장여건에 맞게 품질표시 기준 합리화
유통관리	△ 유통조사 전담인력 부족, 위반 시 낮은 벌칙 등으로 실효성 있는 관리에 한계	△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자 처벌 강화 및 단속인력 확충 추진
유전자 분석	△ 품종식별 유전자 DB를 구축(7품목)·활용 하고 있으나, 다양한 품목 적용에는 한계	△ 유전자 분석기법 개발확대로 종자분쟁 해결 등 품종 검증의 실효성 제고

□ (품종수입 투명화) 과수 등 주요 품목의 외국 보호품종에 대한 판매신고시 권리관계 증명 의무화 및 검역관리 강화

구 분	한 계(As-Is)	추 진 방 향(To-Be)
품종수입	△ 육성권자의 허락 없이 도입된 품종의 재배농가와 권리자 간 분쟁발생 가능성	△ 외국보호품종 국내 도입시 정당한 권리를 갖추도록 제도화
검역관리	△ 검색 강화 등 불법 수입 방지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, 위반사례 지속 발생	△ 규제병해충 및 불법·불량 묘목 수입 차단을 위한 검역 및 기관 협업 강화

Ⅲ. 향후 추진계획

□ 제도개선에 따른 법령정비 및 소요 예산·인력 확보 추진

참고 3

식물신품종보호 및 종자산업 관련 주요 제도 개요

- (품종보호) 신품종 육성자에게 특허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식재산권으로서,
 - 권리획득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요건(신규성, 구별성, 균일성, 안정성, 1개의 고유 한 품종명칭) 충족 필요(효력 : 20년, 과수·임목 25년)
- (생산·수입 판매 신고) 국내에 유통되는 품종의 정보를 관리하고, 품종 특성에 대한 분쟁발생 시에 농가를 보호*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
 - * 분쟁이 발생된 종자와 보관된 종자와의 대비시험을 통해 분쟁의 원인을 규명
 - 최소요건으로 고유의 품종명칭과 종자시료, 구비서류*를 갖추면 수리
 - * 종자업등록증, 검역합격증명서,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등
- (종자보증) 종자의 특성·품질(품종명, 발아율, 병해충 등)을 국가 또는 종자관리사가 보증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고품질 종자의 유통·보급 촉진
 - ▶ 국가보증: 국립종자원이 행하는 보증(대상: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 품종)
 - ▶ 자체보증: 종자관리사가 행하는 보증(대상: 전체 작물 종자)
- (종자품질표시) 소비자가 종자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에 품질을 표시하여 유통
 - (표시대상) 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을 받지 아니한 모든 유통종자
 - * 표시사항 : ①품종명칭, ②발아율, ③생산연도(포장연월), ④종자업등록번호 등
- (종자유통조사: 특사경) 불법·불량 종자 유통차단으로 농가피해 예방 및 유통질서 확립으로 농업 소득증대 및 종자산업 발전기반 확립 기여
 - (조사항목) 종자업 등록,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, 유통종자의 품질표시(과수: 규격표 표시),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